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37977 판결 [지급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3797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가단2012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신한은행

변론 종결2018. 1. 9.

판결 선고2018. 2. 6.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가단2012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주식회사 세영부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현대자동차(주) 또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한 차종에 소요되는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부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2013. 9. 1.자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자	소외 회사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일	2016. 8. 4.까지
피보증채무종류 및 내용	1. 채무종류 : 지급이행보증 2.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특약사항	소외 회사와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대한 물품대금 및 품목지원센터 구상금 채무에 대한 지급이행보증

다. 원고는 2015. 9. 1. 소외 회사와 새로운 '부품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 2차 계약의 상이한 점은 아래 표와 같다.

제2조(공급품목 및 공급방법 등)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문에 따라 공급하는 품목은 현대자동차(주) "또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한 전 차종에 소요되는 보수용부품 및 자동차용품으로 한다.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문에 따라 공급하는 품목은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한 전 차종에 소요되는 보수용부품 및 자동차용품으로 한다.(신설)3. 소외 회사가 원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횟수가 한 분기당 3회 이상일 경우 원고는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보증책임 중단 효력 발생일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4. 원고와 소외 회사의 본 계약 종료시 원고의 지급보증은 즉시 중지된다.
제5조(보증 및 구상금채권)		
제6조(이행지체책임)	3. 소외 회사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고는 7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하 생략)	3. 소외 회사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고는 3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하 생략)

마. 한편 2015. 11.경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보증기일 내인 2016. 3.경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159,067,871원이고, 소외 회사가 품목지원센터에 대한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현대커머셜(주)에게 대위변제한 돈은 141,166,818원으로 그 합계액 300,234,689원(159,067,871원 + 141,166,818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 2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제2차 계약은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각 계약은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이 사건 제2차 계약으로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을 담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기초한 채무만을 보증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른 채무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을 담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나. 실질적인 동일성의 상실 여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주채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이 이 사건 제2차 계약으로 변경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에 동의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제1차 계약에서 제2차 계약으로의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주채무가 실질적인 동일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실시한 증거와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물품대금과 품목지원센터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제2차 계약 또한 채무의 발생원인이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그것과 유사한 점,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달리 이 사건 제2차 계약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부품"을 모두 공급하는 내용이라는 하나, 실제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차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아자동차부품(현대자동차부품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품 포함)"만을 공급받은 점,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부품 및 현대자동차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업거래의향서를 제출받았는데, 소외 회사는 검업거래의향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제2차 계약에서 달라진 제5조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보증한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품목지원센터 구상금 채무가 줄어들어 결국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의 채무도 감소할 여지가 있을 뿐인 점, 제6조의 경우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 주채무 자체의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차 계약은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비교할 때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목적 등 채무의 중요한 내용에 있어 변경이 없어 그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도 변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제2차 계약이 이 사건 제1차 계약과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이 사건 제2차 계약으로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을 담보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의 금액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상의 한도액인 2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다음 날인 2016. 8.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승정

판사김희진

판사정운택